KOSHA GUIDE

C - 79 - 2015

## 초고층 건축물공사(일반사항) 안전보건작업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(안전조치) 내지 제27조 (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) 규정에 의거 초고층 건축물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초고층 건축물공사의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일반 건축공사에 비하여 특수하게 검토하고 준수하여야 할 가설공사, 시공계획, 장비운영, 작업환경, 안전 시설 등의 일반적인 안전보건사항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초고층 건축물"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  - (나) "타워크레인의 베이스 상승방식"이라 함은 크라이밍 마스트(Climbing Mast)에 장착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마스트를 포함한 타워크레인 상부 전체를 상승시킴으로서 마스트의 추가설치 없이 일정한 높이까지 상승시키는 방식을 말한다.
  - (다) "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상승방식"이라 함은 텔레스코핑 마스트(Telescoping Mast)에 설치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타워헤드 부분만을 상승하고 마스트를 추가 설치하여 일정한 높이까지 상승시키는 방식을 말한다.
  - (라) "CPB(Concrete Placing Boom)"라 함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단부에서 콘크리트 압송관을 지지하고 선회가 가능하여 작업 반경 내에 대량 및 정밀 타설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설비를 말한다.